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3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서왕진·정춘생·박은정

김선민 · 김재원 · 황운하

허성무 · 김준형 · 강경숙

차규근 • 이해민 • 신장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함)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함)이 위탁받아 기금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,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	제17조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
설립 등) ① ~ ④ (생 략)	설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음)
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	⑤
을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의2.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
	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
	<u>자 등 자금 지원</u>
2. ~ 14. (생 략)	2. ~ 14. (현행과 같음)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